대 법 원

제 1 부

결 정

사 건 2025모1963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

피 고 인 피고인

등록기준지 부산 동구 수정동 228-49

재 항 고 인 검사

원 심 결 정 부산지방법원 2025. 7. 2. 자 2025로52 결정

주 문

원심결정을 파기하고,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.

이 유

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.

1.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 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.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 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 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. 그러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,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. 따라서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, 그 유예기간 경과로 인하여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,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서,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실효될 원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이므로,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다.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, 재심판결의 형이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,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(대법원 2018. 2. 28. 선고 2015도15782 판결 등 참조).

나아가 이미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하였더라도 그 경과를 두고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,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, 그 집행유예기간에 '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'을 산입할 수는 없다.

- 2.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'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 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'을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였는바, 재심판결의 효력 및 집행유 예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.
 - 3.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,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

원에 환송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25. 9. 26.

재판장 대법관 노 태 악

대법관 서 경 환

주 심 대법관 신 숙 희

대법관 마용주